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댐 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
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6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
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무허가 토지 출입 등에 대한 행정형벌(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)을 행정질서벌(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)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「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21466호, 2026.3.17. 공포, 2026.9.18. 시행)됨에 따라,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, 과태료 부과 기준의 근거 법령 조항을 기존 “법 제53조제1항”에서 “법 제53조 제1항 및 제2항”으로 수정(안 제49조)
- 나. 법 제53조제1항의 신설에 따라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함(안 별표10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. . ~ . 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9조 본문 중 “제53조제1항”을 “제53조제1항 및 제2항”으로 한다.

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9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 <u>53조제1항</u> 에 따른 과태료의 부 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.	제49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 <u>53조제1항</u> 및 <u>제2항</u> 에 따른 -- -----.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49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 다만,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.

다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.

- 1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라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- 1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- 2)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(단위: 만원)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행정청이 아닌 자로서 법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허가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	법 제53조 제1항	500	600	700
나.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	법 제53조 제2항	100	150	200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기후에너지환경부 수자원개발과	
연 락 처	(044) 201 - 7685